

신기술사용협약서

1. 신기술 개요

- 가. 신기술번호: 건설신기술 제 호
나. 신기술명칭:
다. 기술개발자:
라. 신기술범위:
마. 보호기간:

2. 협약내용

- 가. 협약기간:
나. 협약범위:
다. 책임 소재 및 범위:
라. 공사품질 관리:
마. 자재수급:
바. 기 술 료:
사.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:

3. 기 타 (※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약에 따라 기타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)

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민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2에 따라 이 신기술사용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, 시방서 등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, 그 증거로 신기술사용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기술개발자 주 소:

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:

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명):
(인)

신기술사용협약자 주 소:

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:

상호 또는 법인명(대표자명):
(인)